

國政監査 및 調査에 관한 法律中改正法律案

의안 번호	
----------	--

제안연월일 : 2003. 1. .

제안자 : 정치개혁특별위원장

1. 제안경위

- 가. 제234회국회(정기회) 제1차 위원회(2002.11.8)에서 국회관계법
심사소위원회, 선거관계법심사소위원회, 정당관계법심사소위
원회를 구성함.
- 나. 2002년 11월11일, 11월12일 국회관계법심사소위원회와 2003
년 1월14일, 1월16일, 1월20일 간사회의 결과 허태열 위원,
천정배 위원, 이경재 위원, 임인배 위원, 김용학 위원, 김택
기 위원, 김근태 위원, 송영길 위원의 서면동의로 국정감사
및조사에 관한 법률중개정법률안을 제안하기로 함.
- 다. 제235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2003.1.20)
는 국회관계법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내용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제안이유

현행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는 “그 고유업무에 관하여는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자치적으로 감사업무를 시행할 때까지”로 규정하고 있고 1991년부터 지방자치가 실시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의 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국정감사대상기관인 특별시·광역시·도에 있어 국정감사의 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함(안 제7조제2호).

법률 제 호

國政監査및調査에 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國政監査및調査에 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그 감사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
하는 사업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第7條(監査의 대상) 1. (생략)</p> <p>2. 地方自治團體중 特別市·廣域市·道. <u>다만, 그 固有業務에 관하여는 地方議會가 구성되어 自治的으로 監査業務를 施行할 때까지에 한한다.</u></p> <p>3. 4. (생략)</p>	<p>第7條(監査의 대상) 1. (현행과 같음)</p> <p>2. ----- -----<u>다만, 그 감사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다.</u></p> <p>3. 4. (현행과 같음)</p>